

보도 일시	2022.4.29.(금) 조간 2022.4.28.(목) 11:00	배포 일시	2022. 4. 28.(목) 06:00
담당 부서 <총괄>	어업자원정책관 지도교섭과	책임자	과 장 임태호 (044-200-5560)
		담당자	사무관 장수복 (044-200-5565)

봄철 산란기 불법어업,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 5월 한달 간 관계기관 합동으로 육·해상 동시 실시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봄철 산란기를 맞아 5월 한 달간을 불법어업 전국 합동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해양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우선, 동·서·남해와 제주 등 4개 해역에 어업지도선 50여 척을 투입하여, 무허가어업, 조업금지구역 침범, 불법어구 단속, 그리고 어린물고기 불법 포획을 단속한다. 특히, 동해안에서는 살오징어 금어기 위반, 어린대게와 암컷대게 포획행위를, 서해안에서는 변형어구 사용과 어구 초과사용을, 남해안에서는 어선 조업금지구역 침범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해상단속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육상단속반도 운영한다. 단속반 10개 팀을 지역별로 편성하여 수협 위판장, 수산물 도매시장 및 횃집 등 육상에서의 불법어획물 유통·판매행위에 대해서도 단속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전국 합동단속에서 적발된 육·해상 불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즉각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히 조치하고, 어업 허가 정지 또는 취소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계획이다.

최용석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해양수산부는 우리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불법어업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라며 “어업인들도 우리 수산자원이 고갈되지 않도록 「수산자원관리법」 등 관계 법령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총괄>	어업자원정책관실 지도교섭과	책임자	과 장	임태호 (044-200-5560)
		담당자	사무관	장수복 (044-200-5565)
	동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	책임자	과 장	김형덕 (051-410-1005)
		담당자	주무관	정윤희 (051-410-1030)
	서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	책임자	과 장	손영우 (061-240-7903)
		담당자	주무관	최재봉 (061-240-7971)
	남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	책임자	과 장	강원진 (064-780-2421)
		담당자	주무관	김동원 (064-780-2422)



◆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5월 한 달을 『불법어업 전국 합동 지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어업 집중 지도·단속 실시

* 금번 합동단속은 COVID-19 방역지침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해제 (4.18)됨에 따라 국가-지자체 간 육·해상 지도·단속 실시

□ 추진배경

○ '22년 봄철 해역별·업종별·유형별 불법어업*이 전망되어 어업질서 확립을 통한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이용기반 조성 추진

* 금어기(살오징어·감성돔·고등어·말쥐치 등), 금지체장(암컷·체장미달), 어구·구역위반 등

□ 단속개요

○ (기간/주관) 2022. 5. 1 ~ 5. 31(1개월) / 해양수산부

* (참여) 지자체, 동·서·남해어업관리단, 수협중앙회 / (협조) 법무부, 해경

○ (단속계획) 육·해상 합동단속반 편성·운영(국가·지자체 지도선 50여척 등)

* 수산자원보호관리선(425척) 참여를 통한 민간 자율감시감독 기능 강화 병행

○ (단속대상) 무허가·무면허, 조업(금지)구역, 금어기·금지체장, 어구·어법, 허가 제한사항 및 어선법 위반 등 집중 지도단속 실시

□ 중점 단속사항

○ (공통사항) 어린고기 및 산란기 어미고기 포획·유통·판매, 무허가·무면허, 어구·선체 변형, 금지기간·구역 위반 및 허가 외 어구사용 단속

- 금어기(살오징어·감성돔 등), 금지체장(대게 암컷·꽃게 체장미달) 및 어린고기 불법 포획·유통·판매 행위 집중 단속

- 연근해 자망·통발어구 초과부설 및 허가 외 어구사용 등

- 중·대형 저인망어선 및 구획어업 조업(금지)구역 침범 등

- 선체 주요 치수 변경 및 어선 검사 추가시설 설치 등 어선법 위반 점검

불법어업 전국 합동단속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보호 및 국내·외 불법어업 근절을 위하여
5월 한 달간 유관기관 합동으로 불법어업 집중단속 실시

2022. 5. 1.~5. 31.

중점단속대상

- 무허가 무허가 무면허, 미승인 2종 이상 자명조업 등
- 조업구역 중·대형저인망 조업 금지구역 침범 등
- 포획금지·채장 대게(암컷·채장미달), 살오징어·갑성돔·꽃게 불법포획 등
- 어구위반 소형선망, 찰수기 불법어구, 어구 초과 부설(자망·통발) 등
- 허가제한 채낚기(광학위반), 준획위반, 통해구르물(선미 경사로) 등
- 어선위반 어선법위반 불법 등계축, 어선위치 발신장치 미작동·미수리 등

공 통

연근해 국내어선 어업별·유형별·지역별 및
외국어선 무허가·불법어구 등 집중단속

단속기관

주관 해양수산부(동·서·남해어업관리단)
참여 지자체, 수협중앙회
협조 법무부, 해양경찰청

신고 및 문의

대표전화 : 국번 없이 1588-5119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 www.mof.go.kr
지방자치단체 : 불법어업단속 담당부서

동·서·남해어업관리단 · 부산 051-410-1030-3
· 목포 061-240-7970-3
· 제주 064-780-2421-4



봄철 불법어업 근절 전국 합동단속

기간 : 2022. 5. 1.~5. 31.(1개월)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수산부 국민홍보포털 해양수산부